

## 계좌간 자금대체 약관

**제1조(목적)** 본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 라 함)의 거래고객이 회사의 동일고객 계좌 상호간에 자금 대체 거래 (이하 ‘자금대체거래’ 라 함)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조의2(용어의 정의)**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계좌간 자금대체거래 : 고객이 당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 계좌중 고객이 지정한 계좌 상호간에 고객이 전표, 전화, 인터넷통신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신청에 의하여 현금(또는 대용증권)의 입출금(또는 입출고)을 수행하는 거래
- ②계좌번호 : 당사에 개설한 모든 상품 계좌로서 고객과 계좌 개설명칭이 일치하는 실명계좌의 번호
- ③비밀번호 : 계좌개설시 고객 자신이 설정한 숫자 또는 영문자
- ④동일인 명의의 계좌 :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가 동일한 계좌

**제2조(자금 대체거래 계약의 성립)** 고객은 계좌간 자금대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사전 숙지한후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고객의 신청내용이 당사 전산상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된 시점부터 계좌간 자금대체 거래 계약이 성립된다.

- ①자금대체거래 계약은 고객이 자금대체거래 대상계좌의 등록인감(또는 서명감)을 날인 (또는 서명)한 소정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
- ②당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계좌간 자금대체 서비스신청을 입력하는 방법

**제3조(자금대체 거래 대상계좌)** 자금대체거래 대상계좌는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서, 계약 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한다.

**제4조(자금대체 거래 금액)** 자금대체거래 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 (또는 대용증권)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.

**제5조(자금대체 거래의 신청)** 자금대체계약을 체결한 계좌 상호간의 대체거래 신청은 서면, 유선, 또는 PC 등을 이용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, 신청시간은 당사가 정하는 시간에 따른다.

**제6조(본인확인)** ①계좌간 자금대체 요청시 계좌번호, 계좌명, 비밀번호가 이미 당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간주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**제7조(환전에 관한 사항)** 해외파생상품계좌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환전의 시기 및 방법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8조(면책사항)**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①고객의 고의·과실로 인한 손해
- ②전산 장애, 회선 장애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

③고객의 부주의로 자금대체계좌의 비밀번호 등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어 발생한 손해

④기타 회사가 신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해

**제9조(자금대체거래 이용계약의 해지)** 자금대체거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자금대체 대상계좌가 이관, 폐쇄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.

**제9조의2 (서비스제공 중지)** 고객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계좌간 자금대체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- ①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가 폐쇄, 통합, 사고 신고된 경우
- ②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
**제10조(전화 등의 녹음)** 거래고객과 회사는 자금대체 거래업무와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.

**제11조(약관변경 통지)**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,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③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기타사항)**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0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